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59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 : 홍기원 · 박영순 · 박재호

소병훈 • 윤미향 • 윤영덕

윤준병 • 이수진 • 이용빈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운수종사자와 달리 강화된 운전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한 택시 운전자가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까지 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와 달리, 현행법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

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등).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제9조까지 및 제15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 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 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전업무 종사자격) ①・② (생	전업무 종사자격)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③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	
을 취득할 수 없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4
3년간 「도로교통법」제93조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u>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	<u>나에 해당하는 사람</u>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	
<u>라</u>	
<u><신 설></u>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
	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
	면허가 정지된 사람
<u><신 설></u>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
	<u>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u>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u>된 사람</u>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4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자동차운송 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생략)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생략)

1
가. (현행과 같음)
나
<u>제9조까지, 제</u>
<u>14조 및 제15조</u>
다. (현행과 같음)